

제428회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상정된 안건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2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9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9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9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9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9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9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9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9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9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9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9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9

(15시04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준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5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박형수 위원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 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청문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열려야 되지 결론을 정해 놓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의 잘못된 점만 청문회를 해 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해체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목적 자체를 이렇게 하고, 증인도 광규택 의원실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증인 신청한 것 자체가 광규택 의원실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청문회로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이 소위는 도대체 왜 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위에서 청문회를 한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전체회의에서 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방을 벌인다면 모르겠지만 소위에서 이러한 특정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이 청문회 개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소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지금 소위에서 하는 걸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박형수 위원 내가 언제 처음 봤다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다 그랬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론 정해 놓고 청문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적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검찰개혁 4법의 입법 목적 안 읽어 보셨습니까?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사안들이 있는지, 그 입법 목적에 해당할 만한 사항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입법청문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검찰개혁 4법에 나와 있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그 이유, 목적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론을 정해 놓고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내가 볼 때 이 사안은 아니다 싶으면 반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 질의하시고 답변 이끌어 내시면 됩니다.

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에서 특정 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적인 이유가 우선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소위는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공청회 했을 때도 어떤 입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중인·참고인 명단을 꽉 보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불러 놓고 그것을 따져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의 이런 걸 조사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우려와 그리고 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국민 전체를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따져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인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편향되고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법사위가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다수결주의에 의해 자꾸 이런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그걸 보아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균형 있는 사고를 해서 공평한 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장경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논쟁에 대해서, 청문회의 취지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채 해병 진상규명 청문회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청원이 적법,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한 바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향성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청원이나 여러 가지 청문회 실시 목적에 맞게 찬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검찰개혁을 하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쪽과 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쪽이 있겠지요. 그래서 인정하는 쪽은 수사·기소 오남용 사건이라든지 특활비 오남용이라든지 정치적 표적·별건·기획 수사라든지 아마 이런 걸 지적할 거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많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필요성과 검찰의 그동안의 역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 실시 목적은 어찌 됐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의 제안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하는 쪽의 목적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안 하고 추진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또 국민들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예.

지난번에 법안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는 법안소위 주관으로 했었는데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무슨 법안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법사위 차원도 아니고 소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아요.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증인을 한번 보면 관봉권 떠지 사건 관련해 가지고 4명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로 해야 될 사안이지요.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소위에서만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수원지검 진술세미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에 이화영 담당했던 변호사를 불러 가지고 ‘네가 변론한 게 맞네. 법원이 판결한 게 맞네’ 그것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이면 대표적인 게 김경수 아닙니까, 드루킹 사건. 김경수를 불러야지 왜 쓸데없이 이창민·봉지옥·허재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검찰의 권한남용 관련 증언,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어요. 황문규 교수, 김필성 변호사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보면 자기네들 다 패소한 사건, 유죄가 나거나 그런 사건에 억울하다고 와서 한풀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든 공청회를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청문회를 하시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법안하고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인 말씀을 해 주실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참 선동적인 그리고 자기 변호했던 사건, 잘못해 가지고 유죄 확정된 사건의 변호인까지 불러 가지고 그 변명을 듣자는 자리입니까, 국회 법안소위가? 정말 수준 떨어집니다, 진짜.

○소위원장 김용민 다 하셨습니까?

○박형수 위원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잠깐만요.

답변 좀 드리고 할게요.

○박형수 위원 증인 지금.....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먼저 답변 하나 드리고 기회 드릴게요.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신 것들 조금만 정리해서.....

지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다 유죄가 인정된 것 한풀이냐고 하시는데 매우 부적절하고 틀린 말씀이십니다. 대부분 다 무죄 확정되고 검찰의 잘못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증언과 진술들이 나와서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왜 조사를 못 합니까?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해야 될 사안들이라고요? 전체회의와 소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요, 소위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할 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맨날 시간 모자라 가지고 ‘1분 더 주세요. 다음번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끊어졌는데요. 소위에서는 15분을 풀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충분하게 논의 할 수 있는 소위만의 장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안을 꼼꼼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리고 신중하게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에서 소위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궁금한데요.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사람인지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평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할 수 있지요. 왜 못 합니까?

○**박형수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한다라고 지난번 21대국회 때 김용민 위원장님도 엄청 비판하셨지요? 김도읍 위원장이 할 때 답변하면……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저 법사위 아니었는데.

○**박형수 위원** 뭘 안 했어요? 그때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사실관계가 틀리시면 안 되지요.

○**박형수 위원** 답변하면 뭐라고 뭐라고……

○**소위원장 김용민** 저는 김도읍 위원장일 때 법사위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전이네, 그 전에.

○**소위원장 김용민** 그때 안 했지요.

○**박형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소위원장 김용민** 알고 비판을 하셔야지 왜 다른 사람을……

○**박형수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하는 것은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이 한 것에 10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나온 증인과 참고인 명단 중에 도대체 어떻게 이 명단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지금……

○**박형수 위원** 잠깐만, 한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 얘기할 때 자꾸 간섭하는 것도 위원장이 하는 일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이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왜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내 얘기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은 계속 증인을 말씀하시는는데 증인은 우리가 실시계획 채택한 다음에 서류 제출 요구하고 그다음에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권을 그때 논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를 섞어서 다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따 토론 따로 하지 않고 지금 몰아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어차피 위원님들이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다 말씀하시지요. 이따 토론 따로 하지 않고 다 그냥.....

○박형수 위원 그건 그때 가서 또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닙니다. 그러면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에 대한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제한하든지, 그것은 그때 하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지금 제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소위원장 김용민 증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지 마십시오.

○박형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

○박형수 위원 왜 이 얘기에서 얘기를 막지요? 증인 배상윤과 조경식이 들어온 것이.....

○소위원장 김용민 이따가 증인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반적인 얘기로 저는 얘기를 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닙니다. 지금은 실시계획 채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실시계획 채택에 대해 내가 얘기할게요.

이 청문회의 목적은 뭐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증인들은 그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는 증인이에요. 아니, 배상윤이 검찰에 대해서 무슨,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에 대해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목적은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없다라는 그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를 통해 갖고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찰개혁과도 아무 관련 없고 검찰개혁의 무슨 오남용과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소위장으로 청문회장으로 자꾸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자고 지금 소위에서 청문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것을 여기서 청문회 해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관계가 있니 없니, 배상윤 거기 나가서 증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재판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소위원회장에서 그걸 논의하겠다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소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 대상 기관과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9월 5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반대입니다, 저는.

○소위원장 김용민 그 정도 의견 들으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곽규택 위원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반대. 전부 반대.

○소위원장 김용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곽규택 위원 그것 좀 살살 치세요, 위원장님. 감정이 실렸어.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용민 별걸 다 시비를 거십니다. 나와서 한번 쳐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시원하게 치고 싶어요.

○서영교 위원 저쪽 의견에 조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나중에 간사하거나 위원장 하실 때 오늘 말씀을 후회하실 겁니다. ‘쳐보니 시원하군’ 이러실 겁니다.

-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15시25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해 검토한 설명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검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25일 1소위에서 박찬대 의원안을 기초로 해서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후에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전문법원으로 많은 세부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개괄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천·부산 법원 간 관할구역은 박찬대 의원안과 같이 남북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호남지역 등 일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 각 법원 간 토지관할을 임의관할로 설정을 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변론관할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편의이송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심급관할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1심 사건과 단독사건의 2심 사건까지 담당을 하되 합의부 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관할은 각 관할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되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분쟁의 조기 확정을 위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 관할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해사국제법원에서는 박찬대 의원안과 같이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국제상사사건을 심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심판할 사건의 범위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보장이 중요한 소액사건 등은 지방법원과 중복 관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그 외 청사 신축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법률에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부장판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조금 더 설명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가능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토대로 중요 사항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관할구역과 토지관할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장경태 위원님 등 여러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부산 2개 법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법원 상호 간 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특히 지금 현재 교통 인프라에 비추어서 전라도 중에 남해안 지역 일부는 부산이 가깝고 서해안 지역은 인천 쪽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검토해 본 결과 일단 해사사건의 관할 집중이나 사건 배분·구성 관점에서는 남북으로 나누는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서로 나누면—2페이지 하단입니다—인천은 대부분의 국제상사사건하고 또 수도권·전라도 지역의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고 부산은 경상도 지역의 해사사건만 관할하게 돼서 사건 배분이 좀 인천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천법원은 아무래도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상사사건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부산법원은 해사사건 중심, 특히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해사행정사건이 부산 쪽으로 몰려서 특화될 것이 예상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전라도 지역은 해사사건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남북으로 나누고 그래서 충청·대전 이북, 지금 박찬대 의원님안에는 강원도하고 세종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천으로, 그다음에 전북·경북 이남은 부산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때 전라도 지역을 분할해서 관할하거나 인천·부산 법원에서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접근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래에 말씀드리겠지만 토지관할을 전속이 아니라 임의관할로 설계해서 쌍방당사자가 동의할 때에는 원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 또는 접근성이 중요한 일정 유형 사건은 지방법원과의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방안 또 필요한 경우에 지방법원으로 편의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이 지금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수부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 해양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심판하는 업무를 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에 머무르게 되고 부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경우에 해사행정사건은 모두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데 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은 또 인천법원 쪽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면 집중이나 전문화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이전계획이 있다라고도 해수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아직……

○곽규택 위원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끝나고……

○곽규택 위원 지금 바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금은 대전고등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도 서울고등에서 합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대전고등에서 하고……

○곽규택 위원 지금 대전고등에서 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령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요. 현재는 대전고등에서 사건을 담당……

○곽규택 위원 만약에 여기가 이전 안하고 그대로 세종시에 있을 것 같으면 인천에 해사법원이 생겨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인천고등법원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기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해서 이것을 해사법원 사건으로 관찰을 한다면 인천고등법원 사건으로 가게 되고요. 해사법원 사건에서 제외를 한다면 현재 규정상 대전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사법원 사건의 범위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설명 끝나고 다시 여쭤볼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이 사건은 전형적인 해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조문화를 하면서는 해사사건으로 보아서 인천이나 부산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하단 다항입니다.

그리면 인천·부산 법원의 토지관찰을 전속관찰로 설정할 것인지 임의관찰로 설정할 것인지입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재판적’이라고 해서 관찰 생성의 원인되는 주소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피고의 소재지가 재판적이 되는데요. 그 재판적에 해당하는 법원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되고 그 경우에 피고가 응소하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의관찰이고요. 그렇지 않고 관찰 법원으로 전부 다 이송하게끔 하는 것이 전속관찰인데요.

5페이지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안은 토지관찰을 전속관찰로 하고 해사사건에 한해서 원고에게 법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안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임의관찰로 하고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변론 관찰을 허용하고 또 원고가 다양한 원인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소를 제기할 수 되도록 피고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3항, 심급관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심급관찰 여러 가지로 상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사법원의 전문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법원들과의 심급·사물 관찰과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심급 이동의 징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찬대 의원님안, 즉 1심 사건을 전부 관찰하고 단독사건의 2심

사건도 관할하되 합의사건의 2심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사건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사건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2심을 관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등법원 관할 설계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법원 소재지 고등법원, 즉 부산법원 것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인천법원 것은 인천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또 고등법원 단계에서의 법리의 다양성이라든지 경쟁 이런 것을 도모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현행 법관의 인사 패턴을 고려할 때 법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법관을 확보하는 데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2안으로 해사법학회 등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안인데 이 해사사건은 사건의 성격상 법령을 통일적으로 2심 단계에서 해석해서 사건을 빠르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할 법원을 하나에 집중하는 방안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상 기업과 해상 전문 법조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관할권을 집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유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의 각 분쟁 유형별 심판권의 설계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기존의 특허·행정·가정·회생 법원과 달리 어떤 사건 유형을 통으로 떼어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민사사건 중에 해사, 행정사건 중에 해사 이렇게 일부만을 떼어서 관할을 하고 일반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에는 배타적으로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딱 보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되는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제기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넓은 사건을 관할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인천과 부산이 국토의 정중앙이 아니라 말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재판을 받으려 와야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당사자들한테는 불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건 유형 중에 해사민사사건인데요, 박찬대 의원님안을 기초로 해서 필요한 다른 분쟁 유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해사법의 본질에 가까운 유형의 사건에 한정해서 담당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나항, 해사행정사건입니다.

해사행정사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는데요. 박찬대 의원님안은 행정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이라든지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딱 특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해사공법들을 쭉 살펴보니까 해사행정청

외에 여러 가지 위임·위탁 규정 등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종류, 즉 해사공법을 기준으로 해사행정사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게 다양한 사건을 포섭하는 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하단의 해사공법을 정의하는 규정, 예측 가능하게 두되 구체적인 목록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서 매번 법률을 개정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국제상사사건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안은 국제상사사건을 다소 좀 협소하게 상정을 하고 있어서 심판권의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상사사건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예측 가능성은 위해서 주된 사건 유형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은—8페이지 하단에—적어도 일방당사자의 일상 거소, 일상적인 거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2항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항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4항 법률관계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건을 국제사건으로 하고—다음 페이지입니다—‘상사’는 비교적 확립된 법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 상사사건으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어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대한 사건만 좀 배제하고 특허법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배타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지만 접근성 보장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지방법원과의 중복관할을 인정해야 되는 사건 유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선원법 적용 사건은 선원 등이 재해보상금·임금·퇴직금·체당금 등 청구하는 사건인데 그 부분은 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전문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당사자 본인소송의 비율이 높아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일반 지방법원도 중복관할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강제집행·보전처분 사건도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려고 하고 있는데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좀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서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과 분쟁해결의 편의성, 신속성을 더 중시하기 위해서 일반 지방법원도 처리할 수 있는 중복관할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10페이지, 마지막으로 법률의 시행시기인데요. 대법원규칙을 마련하고 그 관련된 인사·조직·시설 등 관련 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경과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회생법원 설치 내지는 가정법원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의 지방법원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일부 떼어 내서 확충해서 법원으로 격상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른 지역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짹 모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좀 여러 가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관의 인사 주기를 고려해서 3월 1일 자로 개원을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특히 동북아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문법원으로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구현하고 어떤 상징적인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 청사를 신축해서 교통의 요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시간 거리에 있는 넓은 지역의 당사자들이 재판하려 오기 편해야 한다든지 또 국제적으로 사건을 유치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재판을 하려 오기 편한 곳,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좋은 GTX 신설 예정지라든지 부산역·부산항 근처에 좋은 부지를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청사를 신축하는 데 심사 단계라든지 설계 법령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부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인천과 부산에 전문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심판권의 범위, 토지관할, 시행시기, 중복관할 인정 여부 등의 쟁점에 관하여 박찬대 의원안을 토대로 실무례에 따라 정리한 법원에 대한 취지에도 대체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사민사사건 중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자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해사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상사사건의 심판 대상과 요건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원 대안은 박찬대 의원안과 달리 당사자 간 재판 관할합의 요건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해사법원의 심판 대상인 사건 수의 증가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은 모두 인천과 부산에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고 합의관할, 변론관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국제거래 실무상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에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사자 자치원칙을 중시하는 실무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국제상사 분쟁과 관련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전부 인천 또는 부산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게 한다면 국내외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 기업 등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공항·항만과 인접한 인천·부산은 원고에게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기업활동의 주된 근거지가 수도권이 대부분인 국내 기업의 접근성이 저하되어 불리한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관할합의 부분을 제외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외국에서의 집행 시 다시 외국 법원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상고심의 관할 법원에 대해서 인천·부산 각 전문법원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하는 방안과 서울고등법원에 관할권을 집중하는 방안 중에 인천·부산 지역의 지속적인 전문성·상징성 강화 필요성, 제1심 법원과 상급 법원의 지리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와 관련하여서 독립 청사 신축 여부는 인천과 부산 두 지역 법원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및 기간, 해사법원 설치 이후 전담 사건 수 변동 추이, 해사법원에 배치될 법관 수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액사건에 대하여 본안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의 보전절차에 대해서도 중복관할 인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보전처분 시 소재지 관할 외 본안의 관할 법원에 중복관할 인정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먼저 법원에서 상세한 검토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의견을 파트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시행시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는 한 6~7년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물론 독립 청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법원을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6~7년 뒤를 시행시기로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뒤로 잡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시행시기를 한 2030년 3월 1일 정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0년 3월 1일도 괜찮은 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역 바로 뒤에 옛날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수부가 이번에 임시 청사로 부산에 오는 지역도 그 근처인 한데 본청사를 짓는 부지도 북항 재개발하는 그 지역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부산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수부 신축하는 그 부지 인근에 해사법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 접근성도 좋고 또 해수부와의 거리도 괜찮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부가 본청사를 지어서 완전 이전이 완성되는 게 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도 2030년 3월 1일 정도로 해 놓고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2030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목포지역, 목포·광주·순천·부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완공 시기를 203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물론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완공 목표 시기인 2030년하고 해사법원 시기를 같이해 두면 좀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30년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 전에 뭔가 해사법원도 옮긴다고 해야 이게 좀 세트가 맞잖아요. 그리고 그 해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2032년, 2033년 이렇게 시행시기를 해 가지고는 너무 늦고, 과연 할

생각이 있나 없나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년 3월 1일 정도로 추진을 하다가 정말 나중에 그때는 도저히 무리다 하면 조금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2030년 3월 1일 정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원에서는 크게 봐서 국제상사·해사민사·해사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해사민사에 대해서는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법무부에서는 국제상사사건까지도 임의관할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사건들이 전부 서울로 갈 겁니다. 인천에 가야 될 만한 사건들은 당연히 서울로 가고 부산에서 할 만한 사건들도 어떤 방식을 쓰든 서울에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산과 인천에 이런 전문법원을 만드는 취지가 지금 사건이 많아서 사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법원을 한번 키워 보자는 생각도 있고 또 사실 정치권에서 좀 지역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관할을 자꾸 늘려 버리면 저는 서울로 사건이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상사 그리고 해사행정 이런 것은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민사의 경우에는 이것 전체를 임의관할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라남북도 정도만 임의관할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수도권과 충청남북도·강원도 이쪽에는 인천에 전속관할을 하고 경상남북도·제주도, 그렇겠지요? 경상남북도·제주도·부산·울산 이렇게는 일단은 부산에 전속관할을 하고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이게 접근성이 애매하니까 일단은 거기의 사건 중에 해사민사사건만 임의관할을 인정하는 그렇게 가야지 부산·인천에 새로 생기는 전문법원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임의관할을 늘려 버리면 저는 새롭게 전문법원을 만드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할 것이다 이런 우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부분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금은 이전 대상에 안 들어 있지만 이제 해수부 본청사가 완공돼서 이전될 때는 상당한 관련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대부분 사실은 해수부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이게 같이 옮겨 가면 부산으로 되는데 그 전에는 인천으로 두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현재의 규정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소재하는 곳에서 그냥 관할 고등법원이 사건을 하는 것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인천 해사법원으로 사건이 가는 것으로 해 버리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에 있고 또 거기 하급 사건은 부산에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고등은 인천으로 간다? 이게 사건 관계인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위치가 정해질 때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이 하는 것으로 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관할 설계에 관해서 지금 6페이지의 1안과 2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1안과 같이 지금 부산과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생기면 고등법원은 인천과 부산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계에서 이게 글쎄요, 과연 학계에서 서울고등법원에다 관할권을 집중해 달라 이런 학계의 주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에요. 한두 번 정도 이런 주장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그분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이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관할권을 집중하게 되면 인천하고 부산에서 하던 사건들이 또 서울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1안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사행정사건에 있어서 해사 대상 사건을 정하는 7페이지 관련 부분은 위낙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그 방안, 법원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법무부에서 9페이지에 나오는 선원법 적용 사건이라든지 소액사건, 등기 할 수 있는 선박 외 재산에 대한 집행·보전처분 외에 증거보전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쉽게 말해서 현재와 같이 각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관련해서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사사건으로 내린다고 본다면 해사법원에서는 1심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고등법원에서 1심으로 담당했던 것을 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해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규정처럼 그냥 고등법원에서 1심으로 담당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 정책 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냥 1심으로 담당하게 한다면 그곳을 해수부의 소재지 고등법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에서 할 것인에 대한 개정 여부가 필요할 뿐이지,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해사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행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과규택 위원 잠깐, 좀 여쭤볼게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올라오는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맞습니다. 공정거래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과규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고 가지고 전형적으로 사실은 해사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부산 앞바다에서 났는데, 지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하는 대전고등법원 가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에서 현재도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어느 한 군데로 이것을 몰아줘 버리면 서로 사고가 난 데하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다 불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원에서 고등법원의 심급을 1심으로 내려 가지고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해사법원이 생길 때 인천하고 부산 쪽으로 사건을 두 군데로 나눠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이 사건을 현재로서는 고등법원에서 1심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예 낮춰서 1심 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게끔 한다면 이 사건의 유형이 해사사건의 유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해사법원을 설계를 할 때는 1심 단계에서 1심 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사건을 종전에는 고등법원 단위에서 1심을 했는데 지방법원 단위에서 1심을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해 주시면 이 사건이 해사사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와 달리 종전처럼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1심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해사사건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없고 현재 규정처럼 해양심판원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리 총괄심의관이 보충해서……

○**곽규택 위원** 사실 이걸 굳이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해야 될 성격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보완설명 드리면 해양 사고에 대해서는 빨리 그 원인을 심판해서 분쟁을 종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재판이, 이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인가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한 심급을 더 보장하자 해 가지고 2심 단계로 내려와서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해양 사고의 원인, 왜 해양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사실 법원보다 전문 심판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상당히 권위를 갖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심으로 내려 가지고 다시 3심급을 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 법률의 연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실제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미리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심급으로 내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양 사고의 어떤 현장이라든지 증거 같은 것은 발생한 곳에 있지만 결국 그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서 재판을 하는 곳은 안전심판원이고 그 자료도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혹시 토론하실……

○**조배숙 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고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해난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으로 바로 가 가지고 단심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고법까지로, 2심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또 한 번 다시 불복해서 재판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게 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판단을 하고요.

○**조배숙 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어 가지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에 지난번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오늘 처음 하는 거라……

그러면 지방……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하단의 둘째 패러그래프 동그라미를 보시면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기재해 놨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우리나라 전국에 한 몇 군데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네 군데 있다고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두 번은 거치는 거군요, 1심·2심이라는 것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청에서요.

○조배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는 만약에 부산에서 이런 해난 사고, 해사 사고가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부산에 있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하다가 이의 제기를 하면 중앙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법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무슨 인천 이쪽으로만 뒀을 때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방해양심판원이 네 군데 있어서요, 부산·인천·목포·동해 이 네 군데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조배숙 위원 다시 중앙으로 오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세종시에 있는 중앙해양심판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결처분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1심이 아닌 2심 단계로 심판원을 관장하는 고등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 의견은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두면 어떨까 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건을 굳이 인천이나 부산이라고 못 박아 둘 필요가 없이 지금처럼 중앙심판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라고 해 놓으면 그것 뭐 대전에서, 고등법원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해양안전심판원이 추후에 부산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관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대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 입장도 그렇고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사건이 일부 의원님 안건에 의하면 해사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담당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마련을 한다면 해사사건에서는 제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규정처럼 하게 되면 그냥 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저도 하나만 확인해 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러면 사실 고등법원도 전문화될 필요가 있

잖아요, 인천과 부산. 그러면 이 고등법원을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은 준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다음 회의 때 어떻게 전문화시키겠다라는 안도 같이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가 검토는 할 텐데요. 지금 전문법원인 행정법원도 있고 파산법원도 있고 가정법원도 있어서…… 그중에 현재 가정법원은 가사전문법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산·회생 법원과 행정법원도 전문법관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사법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해사전문법관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1심에 주로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심 법원에서 충분히 역량을 쌓으신 분들이 고등법원 판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해사사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인천과 부산에 좀 배치하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쟁점별로, 오늘 의결할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금 한번 의견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관할구역 관련해서는 남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 동의가 됐고요. 남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신가요?

○이성윤 위원 아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은……

○이성윤 위원 이견이라기보다는……

○소위원장 김용민 이견이 있으시면 다음번에 그걸 조금 더 정리해서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이성윤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견보다는 법원 검토보고서 보면 남북으로 나누는 안하고 또 동서로 나누는 방법으로 하다가, 아니면 또 전라도 지역을 분할해서 관할하거나 인천·부산 법원에서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부정적이다 해 놓고 결국은 전라도·강원도 등 인천·부산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접근권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의관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입법 과정에서 전라도 등 지역 및 변호사회의 의견 수렴 필요’ 해 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두 달 정도 됐으면 적어도…… 전라도 지역에 해사사건이 좀 있는가 봐요. 정확한 통계를 좀 가지고 계신지 그것하고.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사 전문법원이니까 전문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 관할을 임의관할로 해 놓으면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법원의 이렇게 써 놓은 의도가 뭔지 그걸 한번 통계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라도와 강원도 부분. 특히 저는 이 부분 설명을 좀 듣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지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가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사 전문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전문성이 있는 법원에서 심사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의 가치가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본다면 당사자가 너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의 접근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고심한 끝에 나온 안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서 관할권은 명확히 하고 그 양쪽에 전문성이 있는 법원을 만들도록 하되 기본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당연히 해사사건은 인천이나 부산에다 제기를하게 되고 다른 곳에는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법원은 만들지만 실제 사물관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유롭게 보통재판적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응소관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할권이 생기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자는 것으로 접근성의 편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혹시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통계는 저희가 해사사건에 관한 걸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남권을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사건은 호남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등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해사법원을 가지 않고 호남권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집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저희가 중복적 관할을 인정하자는 취지로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마지막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 질의하신 거지요?

○**이성윤 위원** 그러면 앞에 입법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 및 변호사회의 의견 수렴하신다는 얘기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하시겠다는 뜻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아직까지 저희가 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고등법원이 서울하고 부산만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구고등법원이 생겼는데 전북·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대구로 갔어요. 아시다시피 대구로 가려면 대전으로 올라와 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대구 가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3일, 아무리 전문법원이 있다 하더라도 3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 후로부터 전북·전남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해 가지고, 2박 3일 재판은 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고등법원 설립운동이 일어났고 열심히 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이 생기자 전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 소외됐다 해 가지고 1970년대부터 고등법원 유치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2006년인가요 그때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생겼어요.

재판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전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지리적 거리…… 전북에서 인천 가려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립니다. 또 광주도 그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전북 사람들이 새로운 해사법원을 만들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북·전남·광주 사람들이 차별

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이렇게 임의관할로 해서 ‘너네들 이것 응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광주에 계신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 광주지방법원에 제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사법원에 제소를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접근성이 필요한 소액사건이나 아니면 등록이 필요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해사지방법원에 가지 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해사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 소송 제기를 할 것이냐 부산에 소송…… 부산 해사법원에 제기할 것이냐 인천 해사법원에 제기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남북으로 나눠 놓게 되면 광주에 계신 분들은 부산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나는 인천이 가깝다라고 해서 인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다만 원고의 입장에 따라서 피고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피고가 인천 해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 좋다라고 해서 응소관할을 한다랄지 관합의를 하게 되면 해사법원을 굳이 부산에서 제기 안 하고 인천에서 심리를 하는 것도 허용하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임의관할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쟁점별로 이의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관할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윤 위원님께서 그래도 조금 의문점이 남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일단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있는 소재지의 고등법원을 관할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 중앙해양심판원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천고법, 부산고법, 거기에 또 대전고법까지 다 얹혀 가지고 지금……

○소위원장 김용민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부산으로 갈 것 같은데,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관할 소재지로 하면 나중에 이전되면 부산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겨 두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것 정도로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문화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쟁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의관할 부분에서 응소관할이라든가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도 일응 이 정도로 해서 조문 작업을 해 볼까요, 아니면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곽규택 위원 저는 이의가 좀 있는……

○소위원장 김용민 있으시면, 그러면 조금 더 의견을 나눠 보시면서 이건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급관할 해서 지금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박찬대 의원안으로 1심 사건 합의부 그리고 1심 단독사건은 2심 사건까지 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없으시면 일단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하다가 이의가 있으시면 그때 말씀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관할 관련해서 1안·2안이 있는데 각 소재지, 부산과 인천 고등으로 하자라는 안과 서울고등으로 집중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부산과 인천 고등법원으로 하자라는 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冲动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이것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해사민사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정리한 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지요?

해사행정사건 역시 구체적으로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조문화 작업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국제상사사건 부분도 법원행정처가 정리했던 안으로 한번 먼저 준비를 해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입법화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법무부의 안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에서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쪽의 안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한말씀만 올리면 근본적인 차이는 당사자들이 관할합의를 한 사건에 한정해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요건을 빼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할합의를 한 사건에 한정해서만 국제상사사건을 정의하게 되면 정말 사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법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전속적 관할합의를 빼고 나머지 국제상사적 요건이 있는 사건으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할합의를 한 사건에 한정해서만 하자라는 취지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기서는 국제성이 있는 표지 사건을 전부 다 전속관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외국 간의 거래가 있는 상사사건들이 모두 인천과 부산에 전속관할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제거래 관행에서도 합의관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걸 배제하고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규범과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설명은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여지껏 토론에 나온 결과를 보면 법원행정처 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

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법무부 안도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관련해서 선원법 적용 사건이나 소액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를, 중복적·선택적 심판권 인정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일단은 법원행정처 안으로 준비를 해 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법률 시행시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곽규택 위원님은 2030년 3월 1일 정도로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천은 부지 선정이나 청사 신축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걸릴지 혹시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게 있는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지 선정이 1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청사 신축을 6~7년 정도 잡아 왔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은 부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요. 부산·인천 모두 새롭게 신청사를 신축해서 출범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장경태 위원 기존 청사가 너무 낡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 서부지원이나 인천 북부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존 청사에 지금 자리도 없는……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의 말씀하신 2030년 3월 1일까지로 단축시켜 보자라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도저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는 않고요. 2030년까지로 마련을 해서 법안을 시행하되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계적으로 건물 신축을 하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외람됩니다만 다른 법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건물 신축에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실무진 의견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먼저 기존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은 더 번거로운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현재 기존 청사에 이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굳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서부지원에 약간의 여유분이 있긴 한데요, 해사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지원의 밑으로 들어가는 게 되면 모양새나 전체적으로 상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다음번 회의 때 조금 더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조문화 작업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문화 작업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게

훨씬 더 논의가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전문위원님들과 준비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차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전남·전북의 해사사건이라든지 국제거래사건의 대략적인 통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가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통계도 확인하시고요 미리 그쪽 의견들, 그쪽 법원 판사님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 또 변호사들도 얘기 한번 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전국 법원에서 국제거래를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판사들과 그다음에 국제거래학회에 있는 교수님들 몇 분을 하계 휴정기 때 모시고 대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합된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마련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변협까지 의견 청취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쪽에 혹시 전북·전남·광주의 참여자가 계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학계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그때 대토론회 하실 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광주고등법원의 판사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 나온 의견도 정리해 주시고요. 의견을 더 수렴해 보세요. 전문법원의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또 자칫 전북·전남·광주가 갖는 소외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차피 국민들이 다 똑같이 좋은 법원에서 재판받는 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부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자리 좀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건에 한해서는 지방법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건에 예외를 두자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사건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변협이라도 한번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쪽 지역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필요하면 저희 국회에서도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서영교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까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괴물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에 개입했고 그리고 정치검찰이었다. 그래서 수사를 조작하고 그리고 기소해서 정치권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다 그 검찰의 수사 조작에 개입되어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본적인 과제다 그리고 검찰 청법 개정은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다 동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한 번 더 확실히 짚고 가라 그리고 이것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확실히 논의해라라고 과제를 주셨고 저희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 위원께서 배상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이라고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희대의 사건에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를 함께 공유하면서 주식을 불리는 작업이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해외 로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통령후보로 지목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끼워 넣었어요. 북한하고 과정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돈을 쌍방울이 주었다는 거지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면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대북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그것을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줘 가면서 북한 방문을 주도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나마 배상윤이라고 하는 그 관계자가 ‘그것 사실 아닙니다.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 어떻게 쌍방울에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횡기적인 녹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발언들이 나오고.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한 수사는 도대체 뭐야? 어떤 조작을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선판에 끼어들었고 대선판을 다 혼들어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고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하는 것에 검찰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배상윤 그리고 그 관계된 조경식 부회장,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제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가리고 싶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단하게 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진행형인 사건 그리고 진행이 끝난 사건 그리고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등등에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어떻게 끼어들었고 그 검사를 지휘한 검사들은 누구였고 그리고 그 검사들을 또 지휘한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모두 다 날낱이 밝혀내서 다시는 검찰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정도 하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8인)

성명	직업	사유
안동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신웅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박건욱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관봉권 떠지 유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전성배 사건 수사 지휘한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남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배상윤	(주)KH 회장	대북송금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란 인터뷰 사실 확인
조경식	(주)KH 전 부회장	배상윤 진술 협상 거래의혹, 김성태 진술 회유 및 구명로비 관련

참고인(12인)

성명	직업	사유
정재기	변호사	검찰 해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질의
양승봉	변호사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김광민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진술세미나, 대북송금 조작
김지욱	기자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
이창민	변호사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봉지욱	기자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허재현	기자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이광철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황문규	교수	검찰의 권한 남용 관련 증언
김필성	변호사	검찰의 권한 남용 관련 증언
김진형	변호사	김해시장 사건 당시 변호인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검찰 수사 방해 등 관련 증언

○출석 위원(8인)

곽규택 김용민 박균택 박형수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